

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0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5. 3. 17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전인관)

가. 제정이유

○ 상위법에서 산불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산불 발생 원인 중 화목보일러 등에 따른 주택화재 비율이 전체 산불의 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. 이러한 화재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홍보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,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○ 정의(안 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포상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산림보호법」 제3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)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858(2025. 1. 24.)호]
-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56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1.20.~2025. 2.1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 - 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함.
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

- 안 제3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
- (안 제5조) 산불방지 활동 지원

-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화목보일러 등 주택화재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홍보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